2024년 경기 우수 벤처기업 표창 공고

경기도 산업경제 발전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(기업인) 발굴 및 포상을 위해, **"2024년 경기 우수벤처기업 표창**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도내 벤처기업(기업인)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08월 01일 경기벤처기업협회장

1. 목적

- O 혁신 성장의 기반인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, 도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벤처기업(기업인)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기업 성과 홍보와 벤처기업 자부심 고취
- O 우수 벤처기업 표창으로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했음을 널리 알려 성과를 확산하고, 잠재 창업가에게 창업 의지와 자신감을 부여하여 경기도에서 벤처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향

2. 지원대상

- O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 벤처기업(본사)으로 업력이 만 2년 이상인 기업
 - 창업일 기준 2022년 1월 1일 이전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주소가 경기도 소재 기업
- O 경기도 관내 벤처기업으로서 기술, 경영 등의 혁신능력이 탁월하여 대외 경쟁력이 우수 하고 사회 공헌도가 높으며 올바른 기업윤리로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

3. 선정규모

※ 훈격 및 표창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포창부문	훈 격	2023년 표창 규모(참고)	2024년(안)	
우수 벤처기업 표창	중소벤처기업부장관	8점	- 약 40점 내외	
	경기도지사	15점		
	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	13점		
	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	5점(신규)		
총 40점 내외				

4. 신청접수 안내

- O 신청접수 기간 : 2024년 08월 01일(목) ~ 08월 30일(금) 18시
 - 메일 접수의 경우, 8월 30일(금) 18시까지 유효하며 우편(등기)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
- O 접수 방법 : 신청접수 기간 내 이메일, 우편 모두 제출

- ① 신청서·[서식 1~3]·증빙서류(필수, 선택): 메일 접수
- ② 메일 접수 후, 도장날인 한 신청서 원본과 증빙 서류 모두 우편(등기) 접수
- O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증빙서류
 - 서류접수 기간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 불가
 - 인증서 및 가점 서류 등은 유효기간 내 경우에만 인정

항목	서류명	비고		
1) 신청서				
필수	● 제출서류 체크리스트			
필수	• [서식1] 24년 경기 우수벤처기업 표창 신청서	PDF 형식으로 변환 금지,		
필수	● [서식2] 공적조서	한글파일 제출		
필수	• [서식3]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			
2) 필수서류				
필수	•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	확인기간 유효분		
필수	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1개년 발급본			
필수	• 재무제표 증명원 1부(최근 2개년)	'22~23년		
필수	•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(기업/대표자) 법인의 경우,			
필수	• 국세납세증명서 각 1부(기업/대표자)	기업/대표자 각 1부		
필수	• 산업재해율 확인서(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) 1부	(22, 2214		
필수	•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'22~23년			
필수(법인)	• 법인등기부등본 1부	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		
필수(법인)	• 감사보고서 1부	상장기업만 해당 (최근 2개년)		
필수	● 추천인 사진	이미지 파일		

3) 선택서류(가산점 증빙서류)				
선택	• [서식4호] 산업재산권 출원 목록	최근 3년 이내(22.01.01~)		
선택	• 투자확인서 또는 투자유치 증빙 서류	명시된 투자기관만 인정		
선택	●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-			
선택	• 정부R&D 및 기술혁신과제 참여실적 최근 3년 이내 협약서 또는 공문서 사본			
선택	• 기술 관련 인증서 사본	NET,NET,성능인증서, 우수제품지정증서		
선택	•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인증서 사본			
선택	• 국내·외 품질(규격) 인증서 사본 최근 3년 이내(22.01.0			
선택	• 국제표준인증 ISO 인증서 사본			
선택	• [일·가정친화] 가족친화 인증서	ESG경영 평가지표 항목		
선택	• [환경친화] 녹색인증 기업 인증서			
선택	● 기업유형 확인서 및 인증서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,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			
선택	• 경기벤처기업협회 정회원증 사본			
선택	● 표창장 사본	최근 3년 이내(22.01.01~)		

- O 제출처 : (사)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 회원지원단 강보애 과장
 - [제출1] 이메일 접수주소 : kba22@giva.or.kr ※신청서, 증빙(필수+선택)서류 ··· 메일, 우편 모두 제출
 - [제출2] 우편·등기 접수주소 : (우편번호 16229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층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원지원단 강보애 과장

5. 선정기준 및 절차

- O 선정기준(평가기준 구성)
- 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, 기술·품질, 경영평가(성장성, 안정성, 수익성, 고용 창출), ESG 경영 및 국가 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 반영 (*[붙임3] 표창 심사기준표 참조)
- 기업의 임직원 복지, 국가 경제 기여,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평가
- 업종·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반영
- O 신청·선정 제한기준
- 공고문 내 '[붙임1-1]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' 기준 참고

O 선정절차

공고 (8.1~8.30)	신청접수	- 경기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 및 신청서· 증빙서류 담당자 이메일&우편(등기) 접수		
		∇		
평가진행 (09~10월)	기본요건 심사	- 벤처기업 확인 여부 및 공적사항 허위기재 여부 - 추천제한 규정 해당 여부(추천 제한 규정은 『붙임1-1』 참조 요망)		
	1차 서류심사	- 기술개발 및 투자, 성장성, 안정성, 수익성, 고용창출, ESG 경영 평가 등 - 공적조서 작성의 성실성		
	2차 공적심의 심사	- 1차 서류 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- 공적심의 심사 기준으로 평가 및 훈격 결정 - 공적조서 작성 내용 확인 (*단, 훈격에 따라 '현장실사'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음)		
∇				
평가완료 (11월)	최종심사	- 공적조서 내용을 기반으로 표창 훈격별 각 관계 부처 최종 심사 - 서류심사와 공적심의 평가 및 표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하여 최종 선정		
∇				
시상 (12.06)	시상식	- 2024년 경기벤처기업인의 날 개최 시 표창 수여		

O 선정결과 통보

- 1차 서류심사 결과 통보 : 9월 말 ~ 10월 초 담당자 개별 메일·문자 안내 예정

- 2차 공적심의 결과 통보 : (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) 공적심의 평가 10월 내 진행 후,

2차 공적심의 결과 11월 말 담당자 개별 메일·문자 안내 예정

6. 문의처

- O (사)경기벤처기업협회 회원지원단 강보애 과장
 - ☎ 031-259-7343, 7240 / ⊠ kba22@giva.or.kr

7. 기타사항

- O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O 선정 기업은 표창 심사 기간 동안 주소지 및 상호변경 시 통지 의무가 있으며, 결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음
- O 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 미비 사항에 대한 구제 불가능함

[붙임1-1]

정부포상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

□ 표창 기준

1) 재포상 금지기간 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- **중서금지**(상훈법 제4조) :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
- **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포상금지** : 포상을 받은 자는 그 포상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포상을 받을 수 없음 (정부포상과 지자체 포상 기준 다르기에 아래의 예시 참조)
-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: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훈격별 해당기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

□ 포상추천 제한(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근거)
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2) 형사처분
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신청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,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
- 3) 『상훈법』 제 8조 및 『정부 표창 규정』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- 4) 『산업안전보건법』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-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(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
-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 대상에서 제외
- 현장 경영 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5) 『공정거래관련법』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) 및 그 임원

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6) 『근로기준법』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-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 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-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7) 추천일 당시 『국세기본법』, 『관세법』 또는 『지방세징수법』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-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 포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○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[붙임1-2]

정부포상의 취소

□ 취소 대상

•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,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등 서훈 또는 정부표창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(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)

□ 취소 절차

- 추천권자는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(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함)
-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음
- ·정부포상의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시(정기 취소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회적물의 야기 및 추천권자의 요청 등으로 신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실시(수시 취소)하도록 함
- · 정부포상을 취소하려는 경우 공적 재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후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- * 다만, 「상훈법」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경우 '공적 재검증,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,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' 생략 가능
 - < 정기 취소 >
 - 상훈법 제8조제1항의 제1호(거짓공적)와 제2호(국가안전에 관한 죄)의 사유에 의한 취소 안건은 1년에 1회 국무회의 상정 추진
 - 상훈법 제8조제1항의 제3호(범죄경력)의 사유에 의한 취소 안건은 3년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당해연도 에 1회 국무회의 상정 추진
 - < 수시 취소 >
 - 정부포상관련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거나 논란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부포상을 추천한 추천권자는 신속한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국무회의 상정 추진

□ 사후관리

∘ 포상 취소가 확정된 경우, 추천권자는 포상증서와 훈·포장, 수장·수치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·금전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 행정안전부로 인계하여야 함

□ 관보 게제

- ·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문서로써 취소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, 통보하는 내용에는 '관보에 게제할 내용(포상명, 소속, 성명, 훈격, 취소사유, 환수여부 등)'이 모두 포함되도록 함
- ·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함
- 행정안전부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
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자의 이름을 정부포상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,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